

제9차 한·미 경쟁정책협의회 개최 의미와 결과

공정거래위원회 국제협력과장 | 송 정 원

제9차 한·미 경쟁정책협의회가 지난 10월 31일 양국의 경쟁당국 위원장(급)들이 모두 참석한 가운데 미국 연방거래위원회(워싱턴)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한국 측에서는 백용호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과 경쟁정책국장, 카르텔정책국장, 국제협력과장 등 6명이 참석했고, 미국 측에서는 윌리엄 코바식(William Kovacic) 연방거래위원회장과 토마스 바넷(Thomas Barnett) 법무부 독점금지국 차관을 비롯해 실무책임자 10여 명이 참석했다.

오전 9시부터 3시간여 동안 진행된 회의에서는 ① 양국의 최근 경쟁법·정책 집행 동향 ② 국제카르텔 등 양국간 경쟁법 집행 분야 협력 강화 방안 ③ 특정 이슈로서 거래거절행위의 위법 요건 및 사례 등이 집중적으로 논의되었다.

백용호 공정위위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새 정부의 시장중심정책 기초와 함께 이에 부응한 한국 공정위의 공정거래정책 기초를 소개했다.

백 위원장은 한국 공정위가 '작은 정부-큰 시장'이라는 정부의 정책기조에 맞춰 기본 임무인 시장경제 활성화를 위해 정부의 불필요한 간섭과 규제를 폐지해 나가는 한편, 카르텔이나 시장지배력 남용 등 시장에서의 반칙행위에 대해 감시와 제재를 강화하고 있음을 설명했다.

특히, 정부가 추진 중인 시장중시정책, 규제 완화, 공기업 민영화, 감세, 정부 다운사이징(Down Sizing) 시책 등은 최근 금융위기와 관계 없이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하며, 시장의 반칙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처함으로써 법질서 준수 문화를 확립해 나가야만 시장의 신뢰를 얻을 수 있음을 강조했다.

코바식 연방거래위원회장과 바넷 법무부 독점금지국 차관보는 이런 한국 정부의 정책 방향을 지지하면서 특히, 금융위기와 같은 일시적인 현상으로 인해 시장경제의 근간이며 지속적인 경제 발전을 보장해주는 시장경쟁이 훼손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한미 경쟁당국이 양자협의회 본 회의에서 논의한 주요 내용을 분야별로 간략하게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1. 국제카르텔 집행 공조 강화

양국 경쟁당국이 함께 조사 중이거나 이미 조치한 국제카르텔 사건에 대해 양국의 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조사 진행 상황, 조사 방향, 시장 정보 등의 정보(소위 'Agency Information')를 서로 교환하는데 대해 협의하였다.

한국 측은 미국 경쟁당국이 미국과 한국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제3국 기업에 의한) 국제카르텔을 인지한 경우, 그 사실을 한국에도 통보해 줄 것을 요청했고, 미국 측은 이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현재는 한국기업이 포함된 국제카르텔의 경우만 통보하고 있다.

2. 양국간 협력 강화 방안

한국 측은 한미 경쟁당국간 협력 강화가 국제 카르텔이나 국제 M&A 등의 초국경적 경쟁제한 행위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양국의 경쟁법·정책 발전을 위해 필수적인 점을 강조하면서, 한미 경쟁당국간 양자협의회 연례적(Annually) 개최, 실무자 인적교류 프로그램 운영, 양자협력협정 마무리 등을 제안했다.

이에 대해 코바식 연방거래위원장을 비롯한 미국 측은 한국이 아시아지역에서 경쟁정책 중심국가(Hub)임을 인정하면서,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협력관계를 발전시켜 나갈 것을 희망했다.

미국 측은 양자협의회를 정례적으로 개최하자는 한국측 제안에 매우 긍정적으로 공감을 표시했으며, 실무자(Working Level)들의 교환 프로그램 등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수용의사를 표시했다.

특히, 미국 측은 한국 공정위가 OECD 경쟁센터, 국제경쟁정책 워크숍 등을 통해 아시아의 개발도상국들에게 활발한 경쟁법 집행기술 지원 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점을 높이 평가하면서, 한국 공정위와 향후 기술지원 활동 일정 협력, 기술지원 교재 교환 및 공동 발전, 양국간 경쟁법 연구 민간네트워크 교류방안 등을 제의했다.

3. 거래거절행위 위법성 요건과 사례 토론

일반적으로 시장경제에서는 거래상대방을 선택할 자유가 있고 이를 제약할 경우 시장경제의 효율이 저해되므로, 독점사업자라고 하더라도 경쟁사업자에 대한 거래거절을 제한하는 것은 매우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특히, 미국 측은 거래거절을 규제해 사실상 경

쟁사업자와의 거래를 의무화하는 것은 창의적 기업활동이나 투자를 제약해, 궁극적으로 소비자후생을 저해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4. 경쟁제한적 규제에 대한 경쟁주창 활동

미국 측은 한국 공정위가 경쟁제한적인 규제를 시정하는 경쟁주창활동을 매우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는 것에 대해 높이 평가했다.

특히, 각 부처의 법령 제·개정시 추진과정에서 사전협의를 통해 이를 시정하는 제도적 장치(공정거래법 제63조)에 대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향후 공정위는 이번 한·미간 양자협의회 결과를 분석해 국내 제도 발전에 적극 이용하는 한편, 미국 경쟁당국과의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이번에 미국 측이 한국을 아시아에서 경쟁정책 중심국가로 인정한 것을 계기로 아시아 지역 내에서 중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몽골 등 개발도상국가들을 대상으로 경쟁법 집행에 관한 기술지원 활동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통해 한국기업들이 아시아지역 내에서 보다 원활하게 기업활동을 영위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아시아지역 내에서 명실상부한 선도 국가로서의 위상을 확립하는데 더욱 노력을 경주할 계획이다.

※ 이 글은 필자의 개인적 의견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공식적 입장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